# 대 법 원

# 제 1 부

## 판 결

사 건 2005두11272 종합체육시설업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

원고,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

피고, 상고인 안산시장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. 8. 12. 선고 2004누26385 판결

판 결 선 고 2006. 3. 9.

### 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# 이 유

#### 1. 원심의 판단

원심은, 원고들은 2003. 7. 3.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0-2 체육용지 8,26 4.4㎡ 지상에 지하 1층, 지상 7층, 연면적 27,019.51㎡(2003. 11. 28. 연면적이 25,296.26 ㎡로 변경됨)의 운동시설(제1, 2종 근린생활시설)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판시의

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, 2004. 5. 27. 피고에게 종합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12조 본문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판시의 이 사건 종합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실,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. 6. 30.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 설치하고자 하 는 목욕시설과 식당은 그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이 고, 위 목욕시설과 식당의 면적을 합하면 부수용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%를 초과 하여 지구단위계획상 도시설계시행지침 제9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 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, 법 제11조, 법 시 햇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'식당, 목욕시설, 매점 등(이하 '목욕시설 등'이라 한 다) 임의적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'는 의미는 위 운동시 설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이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라는 취지이지 운동시설의 부대시설로 목욕시설 등을 설치 하는 경우에도 위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인ㆍ허가까지 받으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, 그 파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, 2층 목욕시설과 1, 3층의 스넥코너 및 식당은 그 출입문 등의 구조로 인해 1층 수영장과 3층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 등 운동시설의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운동시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, 그 면적의 합계인 4,457.65㎡를 이 사건 건물의 부수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중 부수용도로 사용허가된 20%를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.

#### 2. 당원의 판단

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.

구 건축법(2000. 1. 28.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0조, 제62조에 따라 도시설계로 수립되었다가 구 도시계획법(2002. 2. 4.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) 제42조 제1항, 부칙 제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된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(이하 '지구단위계획'이라 한다) 제4조 및 제99조는 건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80%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하고, 건물의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20% 미만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건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로는 운동시설, 부수용도로는 1, 2종 근란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・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, 목욕시설 등이 지구단위계획상 주용도인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목적과 기능이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규모 역시 그러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, 설사 그 시설이 운동시설의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.

그런데, 기록에 의하면, 이 사건 목욕시설의 면적은 목욕장, 이발소, 휴게실을 합하여 928㎡(탈의실 등 제외)로서 운동시설인 수영장의 총면적 893㎡을 오히려 상회하고, 식당 및 스넥코너의 면적 역시 675㎡에 이르고 있어서 그 규모가 이 사건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,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목욕시설 등의 규모가 이 사건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목욕시설 등이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목욕시설 등이 이 사건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,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구단위계획 제4조 및 제99조에 규정된 건물의 용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,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.

#### 3. 결론

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김지형 _	
	대법관	강신욱 <sub>-</sub>	
주 심	대법관	고현철 _	
	대법관	양승태 <u></u>	